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개요

- 1. 공지사항**
- 2.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개요**
- 3.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추진 과정**
- 4.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주요내용 전문 비교 표**



# 1. 공지사항

## 1) 추가 용어 수정 계획

- 관련 용어 :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전문학위'
- 수정 근거 : "전문학위" 용어를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용어와 구분되는 용어로 개정이 요구됨(교육부 인정기관 지도감독 소위원회)
- 수정 계획 : 2013년 12월 말에 출판 예정인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에 수정 반영

## 2) 인증심사지침서 공표 계획

-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는 "인증심사지침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제시
- 일부 추가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 별도 공지 예정
- 2013년 12월 말에 출판 예정인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와 함께 공지

## 3) 영문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계획

-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및 "인증심사지침서"를 영문으로 작성
- 2014년 1~2월 까지 완성하여 건인원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4)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에 의한 인증심사 계획

- 대상 : 2014년도 최초인증 및 계속인증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인증 신청/실사 프로그램
  - 2014년 봄 학기 인증실사 대상 프로그램
  - 2014년 봄 학기 인증(후보자격) 신청 예정 프로그램
  - 2014년 2월 연례보고서(AR) 제출 대상 인증 프로그램
- 평가 : 공표시기 자연으로 2014년도 봄 학기에 시행되는 각 심사단계에서 미 반영된 인증기준은 계획으로 평가
- 건인원 인증위원회 및 인증실사팀에 사전 공지

## 2.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개요

구 분	내 용												
■ 개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인원 인증제도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졸업 시 학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확립</li> <li>■ 사전투입 및 정량적 기준에 의한 평가를 성과중심의 평가 체제로 전환</li> <li>■ 학생수행평가기준 운영/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해석의 편차 최소화 등)</li> <li>■ 재심(이의제기) 신청 조건, 인증의 조율 등 인증절차 개선</li> <li>■ 인증기준 및 절차 용어집 마련</li> </ul>												
■ 인증기준 개정 추진 일정	<table border="0"> <tr> <td>· 인증기준 개정 초안 작성</td><td>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TF Team 초안 작성(교육부 인정기관 심사)</td></tr> <tr> <td>·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운영</td><td>기간 : 2012년 9월 ~ 2013년 3월</td></tr> <tr> <td>· 개정 인증기준 수정안 작성</td><td>기간 : 2012년 10월 초 ~ 10월 중</td></tr> <tr> <td>· 개정 인증기준 1차 공청회</td><td>대상 : 회원단체 및 전국대학 / 2012년 10월 25일</td></tr> <tr> <td>· 개정 인증기준 2차 공청회</td><td>대상 : 회원단체 및 전국대학 / 2013년 02월 05일</td></tr> <tr> <td>·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의견수렴 최종보완</td><td>기간 : 2013년 02월~ 2013년 03월</td></tr> </table>	· 인증기준 개정 초안 작성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TF Team 초안 작성(교육부 인정기관 심사)	·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운영	기간 : 2012년 9월 ~ 2013년 3월	· 개정 인증기준 수정안 작성	기간 : 2012년 10월 초 ~ 10월 중	· 개정 인증기준 1차 공청회	대상 : 회원단체 및 전국대학 / 2012년 10월 25일	· 개정 인증기준 2차 공청회	대상 : 회원단체 및 전국대학 / 2013년 02월 05일	·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의견수렴 최종보완	기간 : 2013년 02월~ 2013년 03월
· 인증기준 개정 초안 작성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TF Team 초안 작성(교육부 인정기관 심사)												
·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운영	기간 : 2012년 9월 ~ 2013년 3월												
· 개정 인증기준 수정안 작성	기간 : 2012년 10월 초 ~ 10월 중												
· 개정 인증기준 1차 공청회	대상 : 회원단체 및 전국대학 / 2012년 10월 25일												
· 개정 인증기준 2차 공청회	대상 : 회원단체 및 전국대학 / 2013년 02월 05일												
·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의견수렴 최종보완	기간 : 2013년 02월~ 2013년 03월												
■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table border="0"> <tr> <td>위원장 : 최재필(KAAB 이사)</td><td></td></tr> <tr> <td>· 대한건축학회 추천 전문가</td><td>유길준, 박경립, 이강훈</td></tr> <tr> <td>·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전문가</td><td>이근창, 전영철</td></tr> <tr> <td>· 한국건축가협회 추천 전문가</td><td>김동훈, 이충기</td></tr> <tr> <td>· 한국건축학교육협의회 추천 전문가</td><td>신재억</td></tr> <tr> <td>·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추천 전문가</td><td>이장범, 이준석</td></tr> </table>	위원장 : 최재필(KAAB 이사)		· 대한건축학회 추천 전문가	유길준, 박경립, 이강훈	·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전문가	이근창, 전영철	· 한국건축가협회 추천 전문가	김동훈, 이충기	· 한국건축학교육협의회 추천 전문가	신재억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추천 전문가	이장범, 이준석
위원장 : 최재필(KAAB 이사)													
· 대한건축학회 추천 전문가	유길준, 박경립, 이강훈												
· 대한건축사협회 추천 전문가	이근창, 전영철												
· 한국건축가협회 추천 전문가	김동훈, 이충기												
· 한국건축학교육협의회 추천 전문가	신재억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추천 전문가	이장범, 이준석												
■ 개정 인증기준 및 절차 주요 항목	<table border="0"> <tr> <td>· 인적자원, 물리적 자원, 정보자원</td><td>정량 기준을 삭제하고 성과중심의 정성 평가로 전환</td></tr> <tr> <td>· 프로그램 학습성과</td><td>학생수행평가기준(SPC) 항목 37에서 30개로 유사항목 통폐합, 용어수정 등</td></tr> <tr> <td>· 재심(이의제기)</td><td>조건부 2년 인증, 인증유예, 인증거부 외에 3년 인증도 재심(이의제기)신청 가능</td></tr> <tr> <td>· 기타</td><td>기타 인증절차의 개선 및 용어집 작성 등</td></tr> </table>	· 인적자원, 물리적 자원, 정보자원	정량 기준을 삭제하고 성과중심의 정성 평가로 전환	· 프로그램 학습성과	학생수행평가기준(SPC) 항목 37에서 30개로 유사항목 통폐합, 용어수정 등	· 재심(이의제기)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유예, 인증거부 외에 3년 인증도 재심(이의제기)신청 가능	· 기타	기타 인증절차의 개선 및 용어집 작성 등				
· 인적자원, 물리적 자원, 정보자원	정량 기준을 삭제하고 성과중심의 정성 평가로 전환												
· 프로그램 학습성과	학생수행평가기준(SPC) 항목 37에서 30개로 유사항목 통폐합, 용어수정 등												
· 재심(이의제기)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유예, 인증거부 외에 3년 인증도 재심(이의제기)신청 가능												
· 기타	기타 인증절차의 개선 및 용어집 작성 등												
■ 개정 인증기준 적용 범위 및 시기	<table border="0"> <tr> <td>· 공표 시기</td><td>2013년 12월 04일</td></tr> <tr> <td>· 적용 시기</td><td>2014년 전반기(봄학기) 인증(후보자격) 신청부터 개정 인증기준 및 절차 적용 평가</td></tr> <tr> <td>· 적용 방법</td><td>공표시기 지연을 감안하여 인증심사에서 개정/변경된 기준은 유동적으로 평가 (실사팀 교육에 반영)</td></tr> <tr> <td>· 적용 대상</td><td>최초인증 및 계속인증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인증 신청/실사 프로그램</td></tr> </table>	· 공표 시기	2013년 12월 04일	· 적용 시기	2014년 전반기(봄학기) 인증(후보자격) 신청부터 개정 인증기준 및 절차 적용 평가	· 적용 방법	공표시기 지연을 감안하여 인증심사에서 개정/변경된 기준은 유동적으로 평가 (실사팀 교육에 반영)	· 적용 대상	최초인증 및 계속인증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인증 신청/실사 프로그램				
· 공표 시기	2013년 12월 04일												
· 적용 시기	2014년 전반기(봄학기) 인증(후보자격) 신청부터 개정 인증기준 및 절차 적용 평가												
· 적용 방법	공표시기 지연을 감안하여 인증심사에서 개정/변경된 기준은 유동적으로 평가 (실사팀 교육에 반영)												
· 적용 대상	최초인증 및 계속인증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인증 신청/실사 프로그램												

### 3. KAAB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추진 과정

일 자	절 차	내 용
~ 2012.05	KAAB TF Team	◦ KAAB 2012 인증기준 및 절차 초안 작성 / 교육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2012.09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구성 (5개 단체 추천 전문가 총 11명으로 구성) ◦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초안 검토 및 수정
2012.10.25	1차 공청회	◦ 전국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 대표자 대상 개정초안 공청회
2012.11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수렴 및 수정안 작성
2013.02.05	2차 공청회	◦ 전국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 대표자 대상 의견수렴 수정안 공청회
2013.02	법률 전문가 자문	◦ KAAB 2012 인증기준 및 절차 문장/용어집 전문가 자문
2013.03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최종안 작성 (2013년으로 수정)
2013.04	KAAB TF Team	◦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최종안 용어/문장 등 최종 검토
2013.07.08	KAAB 이사회	◦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최종안 보고 및 조건부(교육부 사전승인) 승인
2013.11.15	교육부	◦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최종안 교육부 사전보고 및 승인
2013.12.04	KAAB 이사회	◦ 개정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공표

### 3.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주요 개정내용 전문 비교 표

구분	"KAAB 2010 인증규준"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최종안)	개정 사유	
목 차	<b>I . 인증기준 및 절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소개 및 인증절차 개관</li> <li>2 인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 관점</li> <li>2.2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li> <li>2.3 학위 및 교과과정</li> <li>2.4 학생정보</li> <li>2.5 인적자원 및 운영체계</li> <li>2.6 물리적 자원</li> <li>2.7 정보자원</li> <li>2.8 재정자원</li> <li>2.9 연구활동</li> <li>2.10 학생수행평가기준</li> </ul> </li> <li>3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li> <li>4 인증 절차</li> </ul>	<b>인증기준 및 절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소개 및 인증절차 개관</li> <li>2 인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art I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li> <li>2.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li> <li>Part II 교육 프로그램 운영체계 및 교육환경</li> <li>2.2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li> <li>2.3 학위 및 교과과정</li> <li>2.4 학생정보</li> <li>2.5 인적자원 및 운영체계</li> <li>2.6 물리적 자원</li> <li>2.7 정보자원</li> <li>2.8 재정자원</li> <li>2.9 연구활동</li> </ul> </li> <li>Part III 프로그램 학습성과</li> <li>2.10 학생수행평가기준</li> <li>3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li> <li>4 인증 절차</li> </ul> <p>부록 - 인증후보자격 및 인증신청 심사기준 - 인증기준 및 절차 용어집 등</p>	<p>2 인증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 인증기준 항목을 3개 유형으로 대분류하여 각 유형별 인증기준이 갖는 의미 강조</li> <li>■ 정량적 기준을 삭제하여 정성적 평가를 지향하고 정량적 기준 삭제에 따른 준비와 평가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위해 인증심사지침서 활용</li> <li>■ 학생수행평가기준이 프로그램의 학습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임을 강조하기 위해 "프로그램 학습성과"로 분류하고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개선</li> <li>■ 재심 등 인증절차의 개선</li> <li>■ 인증후보자격 및 인증신청 심사기준 외부공개</li> <li>■ 인증기준 및 절차 용어집 신설</li> </ul>	
		<b>II . 인증심사지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 프로그램 인증실사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인증실사 인건별 세부 확인사항</li> <li>1-2 인증기준에 대한 세부항목 평가</li> <li>1-3 실사팀 인증실사 의례</li> </ul> </li> <li>2 실사팀 작업실 준비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 실사팀 작업실</li> <li>2-2 학생 성과물 전시</li> </ul> </li> </ul>	<b>인증심사지침서 - 별도책자로 작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보완사항으로 인해 2013년 12월 말까지 공지 예정</li> <li>I 실사팀 위원용</li> <li>II 교육 프로그램 용</li> <li>부 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심사지침서를 별도책자로 구분하고 실사팀 위원용과 교육 프로그램용으로 구분</li> </ul>
		<b>III . 학생수행평가기준 해제</b>	<b>학생수행평가기준 해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해제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보완</li> </ul>

구 분	KAAB 2010 인증기준 및 절차	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개 요	<p><b>2. 인증기준</b></p> <p>건축교육은 두 가지 기본적 목적을 가진다: 창조적이고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사려 깊은 자격을 갖춘 전문적 설계인/건설인을 길러낸다. 지적으로 성숙하고 생태적으로 민감하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훌륭한 세계시민을 길러낸다.</p> <p>UIA and Architectural Education: Reflections and Recommendations, Berlin, 2002</p> <p>세계건축사연맹(UIA)은 건축사를 위한 교육의 명확한 틀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 바, 건축사는 새로운 세기에 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문화적 유산의 틀 속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기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p> <p>건축학교육은 건축이 지난 여원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각 건축 프로그램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확고하게 제시되어야 한다.</p> <p>위와 같은 국제적 건축학교육의 맥락에서 건인원은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을 위한 교과기준과 교육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업무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서 건축학교육의 발전과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사가 되기 위한 기초지식과 함께 실력을 갖춘 건축학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건인원이 인증을 부여한 건축학교육을 이수하고 취득한 건축학교육 전문학위가 유사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상호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것이다.</p> <p>따라서 각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은 건인원의 인증기준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하고 각 대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설립목표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러한 관점들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명시하여야 한다.</p>	<p><b>2. 인증기준</b></p> <p>건축교육은 두 가지 기본적 목적을 가진다: 창조적이고 윤리적으로 건강하며 사려 깊은 자격을 갖춘 건축전문가를 길러낸다. 지적으로 성숙하고 생태적으로 민감하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훌륭한 세계시민을 길러낸다.</p> <p><i>UIA and Architectural Education: Reflections and Recommendations, Berlin, 2002</i></p> <p>세계건축사연맹(UIA)은 건축사를 위한 교육의 명확한 틀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 바, 건축사는 새로운 세기에 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문화적 유산의 틀 속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기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p> <p>건축학교육은 건축이 지난 여원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각 건축학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확고하게 제시되어야 한다.</p> <p>위와 같은 국제적 건축학교육의 맥락에서 건인원은 “<b>건축설계의 전문지식과 건축산업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성, 윤리성,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국제수준의 건축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과기준과 교육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업무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서 건축학교육의 발전과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사가 되기 위한 기초지식과 함께 실력을 갖춘 건축학인력 배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b>건인원이 인증한 건축학교육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개정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조건인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고</b>, 취득한 건축학교육 전문학위는 유사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상호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이다.</b></p> <p>따라서 건인원의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건인원의 인증기준에 대한 대응을 통해 <b>학생이 졸업 시 까지 아래의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요지향 교육과 성과중심 교육체계를 갖추어야 하고</b>, 각 대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설립목표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유의 방법에 의해 이러한 관점들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명시하여야 한다.</p> <p><b>다음의 핵심역량은 교육기관이 갖추어야하는 인증기준 Part1, Part2를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성과인 part3에 의해서 성취되어야 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교양적 소양 능력</li> <li>2. 졸업 후 실무수련, 건축사자격시험 및 등록,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li> </ol>

	<p><b>3. 외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건축적 의사전달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b></p> <p><b>4. 건축전문가로서 건축주,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b></p> <p><b>5. 인간행태, 건축역사, 장소성, 사회맥락 등의 이해와 활용 능력</b></p> <p><b>6. 건축설계를 위한 자료의 분석 및 응용 능력</b></p> <p><b>7. 무장애 설계와 인명안전 및 피난 원리를 건축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b></p> <p><b>8.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설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b></p> <p><b>9. 설계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여 종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b></p> <p><b>10. 건축을 구성하는 각종 시스템들이 통합된 건축설계 능력</b></p> <p><b>11. 건축물의 시공 기술과 절차에 대한 지식</b></p> <p><b>12. 설계업무 수행 중 건축주 및 건축 관련 업역 종사자들과의 협업 및 조정 능력</b></p> <p><b>13. 건축 산업 전반에서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 직업윤리, 사회기여에 대한 인식</b></p> <p>건인원의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최소 5년 전일제 전문학위 또는 2년 이상 전일제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으로서 아래의 3개 Part로 구성된 10개 항목, 총 43개의 세부 인증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건인원의 인증기준 및 절차를 통해 학생이 졸업 시 까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 세부 인증기준과의 상관관계는 핵심역량과 인증기준과의 상관관계 도표와 같다.</p> <p><b>Part I.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b></p> <p>2.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소속 대학교</li> <li>2.1.2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학생</li> <li>2.1.3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건축사 자격취득 및 등록</li> <li>2.1.4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전문분야</li> <li>2.1.5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사회</li> </ul> <p><b>Part II. 교육 프로그램 운용체계 및 교육환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2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li> <li>2.3 학위 및 교과과정</li> <li>2.4 학생정보</li> <li>2.5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li> <li>2.6 물리적 자원</li> <li>2.7 정보자원</li> <li>2.8 재정자원</li> <li>2.9 연구활동</li> </ul> <p><b>Part III. 프로그램 학습성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0 학생수행평가기준</li> </ul>
--	--

		<b>핵심 역량과 인증기준과의 상관관계 도표</b> 
<b>건축학 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b>	<p>2.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 관점</p> <p>(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소속대학교</p>	<p><b>Part I.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b></p> <p>2.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p> <p>2.1.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소속대학교</p>

<p>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소속 대학교의 다른 여러 교육 및 연구기능의 맥락과 일치하여야 하며, 소속대학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프로그램은 또한 소속대학교의 교육 및 설립 목표 수행에 기여하여야 한다.</p> <p>프로그램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에 아래 항목들에 대한 대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대학교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역할, 소속대학교에 기여하는 바와 발전 비전</li> <li>■ 전체 대학교 운용 맥락에서 본 해당 프로그램 교수진 채용 및 운용 기준과 학생선발에 대한 기준</li> <li>■ 해당 프로그램의 학생, 교수진, 교직원들의 소속 대학교 행정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 정도</li> <li>■ 소속대학교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체계</li> </ul>	<p><b>인증기준</b>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은 소속대학교의 다른 여러 교육 및 연구기능의 맥락 속에 존재해야 하며, 소속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 및 설립 목표 수행에 기여해야 한다.</p> <p>프로그램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이하 "프로그램 보고서")에 아래 항목들에 대한 대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대학교의 교육 및 설립 목표에 기여하는 바와 발전 비전</li> <li>■ 전체 대학교 운용 맥락에서 본 해당 프로그램 교수진 채용 및 운용 기준과 학생선발에 대한 기준</li> <li>■ 소속대학교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체계</li> </ul>
<p>2)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학생</p> <p>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그리고 졸업 후 건축실무에서 건축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화 시대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수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p> <p>프로그램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에 아래 항목들에 대한 대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의견의 존중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사 결정 방식 훈련</li> <li>■ 학생들의 장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li> <li>■ 국내외 건축실무 및 다양한 관련분야에의 참여 기회 제공</li> <li>■ 학생으로서의 독창성, 자신감, 자아발전 의식 등을 고취시키고 독려하는 환경 제공</li> </ul>	<p><b>2.1.2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학생</b></p> <p><b>인증기준</b>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재학기간 및 졸업 후 건축실무를 하는 동안 건축전문가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독려하고, 국제화 시대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p> <p>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보고서에 아래 항목들에 대한 대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b> 다양한 의견의 존중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방식 훈련</li> <li>■ 학생들의 장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li> <li>■ 국내외 건축실무 및 다양한 관련분야에의 참여 기회 제공</li> <li>■ 학생으로서의 독창성, 자신감, 자아발전 의식 등을 고취시키고 독려하는 환경 제공</li> </ul>
<p>(3)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건축사 자격취득 및 등록</p> <p>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인턴쉽(실무수련) 경험으로부터 건축사 등록에 이르기까지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 인증의 취지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 이것은 인증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의무이며, 신입생 모집 및 교육 프로그램 홍보에 항상 일관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p>	<p><b>2.1.3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건축사 자격취득 및 등록</b></p> <p><b>인증기준</b>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b>현장실습</b> 경험으로부터 <b>실무수련, 건축사 자격시험</b> 및 등록에 이르기까지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 인증 취지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p>

<p>프로그램은 아래 항목들에 대한 대응방식을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사 등록에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교육기준 충족 여부</li> <li>■ 안전쉽(실무수련) 기회 부여 방안</li> <li>■ 건축사 등록을 위한 의무 인턴쉽(실무수련) 기간에 대한 적절한 사전교육과 졸업 이후의 계속교육 방안</li> <li>■ 건축사 윤리강령과 사회적 책임의식 교육 방안</li> <li>■ 지난 인증실사이후 졸업생 중 건축사 자격 취득과 등록을 필한 졸업생의 비율</li> <li>■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 인증의 취지와 효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내를 위한 건인원 작성 문장(인증규준 4.7.1항 참조) 수록 여부와 프로그램의 인증심사 관련정보 공개 여부(인증규준 4.7.2항 참조)</li> </ul>	<p>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보고서에 아래 항목들에 대한 대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 중 현장실습 경험 기회 부여 방안</li> <li>■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필수조건인 실무수련과 건축사 자격시험, 등록 및 실무 교육에 대한 적절한 사전교육</li> <li>■ 건축사 윤리강령과 사회적 책임의식 교육</li> <li>■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지 및 효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내를 위한 건인원 작성 문장(인증기준 및 절차 4.7.1항 참조) 수록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의 인증심사 관련정보 공개(인증기준 및 절차 4.7.2항 참조)</li> </ul>
<p>(4)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전문분야</p> <p>건축사의 업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적 환경, 다양한 건축주의 요구, 복잡한 법규와 기타 규제사항, 그리고 날로 확장되는 지식기반과 함께 변화한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건축사가 되어 실무를 할 때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p> <p>프로그램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에 아래 항목들에 대한 대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과 건축설계 실무자와의 교류</li> <li>■ 계속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li> <li>■ 건축 실무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분야와의 협업 체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li> <li>■ 건축관련 전문분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와 존중</li> <li>■ 건축사의 책임에 대한 이해와 건축주, 공공, 기업 간의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해 나가는 능력 배양</li> <li>■ 성실한 전문직 수행을 위한 윤리의식의 습득과 배양</li> </ul>	<p>2.1.4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전문분야</p> <p><b>인증기준</b></p> <p>프로그램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적 환경, 다양한 건축주 및 법규적 요구사항들과 날로 확장되고 있는 지식기반과 함께 요구되는 건축사의 역할변화에 대해 적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켜야 한다.</p> <p>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보고서에 아래 항목들에 대한 대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실무전문가와의 교류</li> <li>■ 건축 전문분야의 실무에 있어서 다양한 협업체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li> <li>■ 건축관련 전문분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와 존중</li> <li>■ 건축사의 책임 이해와 건축주, 공공, 기업 간에 상충되는 이해를 조정해 나가는 능력 배양</li> <li>■ 성실한 전문직 수행을 위한 윤리의식의 습득과 배양</li> </ul>
<p>(5)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사회</p> <p>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이 현재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건축 및 도시설계 실무를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제안할 수 있게 교육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여야 한다.</p> <p>프로그램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에 아래 항목들에 대한 대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p>2.1.5 건축학교육 프로그램과 사회</p> <p><b>인증기준</b></p> <p>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이 현재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건축 및 도시설계 실무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제안할 수 있는 안목과 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여야 한다.</p> <p>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보고서에 아래 항목들에 대한 대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p>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환경에 대한 다양한 집단의 상충되는 이해 관계를 협의, 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li> <li>■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서의 건축적 지식과 기술 기반 형성</li> <li>■ 공간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의 윤리적 측면 이해</li> <li>■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직 수행에 대한 이해</li> </ul>	<p>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집단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협의, 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li> <li>■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서의 건축전문 지식기반 형성</li> <li>■ 공간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의 윤리적 측면 이해</li> <li>■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직 수행에 대한 이해</li> </ul>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 체계	<p>2.2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p> <p>교육목표를 달성하고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자체평가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건축학교육 인증의 주요 관점에 대한 인증기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p> <p>자체평가체계에는 교수진 구성과 학생 모집 방안, 졸업 동문들의 의사 청취 및 반영에 대한 방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 수업평가 방식만으로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대신할 수 없음을 주지하여야 한다.</p> <p>인증평가를 위하여 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도 실질적인 자체평가체계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이 보유한 자체평가체계 개관</li> <li>■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자체평가방식과의 상관관계</li> <li>■ 프로그램 운영방안 및 종장기 발전계획과 자체평가방식과의 상관관계</li> <li>■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 관점에 입각한 프로그램 교과운영과 교육환경에 대한 교수진, 학생 및 졸업동문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 방안</li> <li>■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의 장점 및 향후 발전방향</li> <li>■ 기타 자체평가체계 관련사항</li> </ul>	<p><b>Part II 교육 프로그램 운영체계 및 교육환경</b></p> <p>2.2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p> <p><b>인증기준</b></p> <p>프로그램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b>프로그램은 자체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체계를 갖추어야 하며</b>, “2.1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p> <p>제시된 자체평가체계에는 교수진 구성 및 학생 모집방안, 졸업동문들의 의사 청취 및 반영에 대한 방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 수업평가 방식과 <b>물리적, 인적자원의 활용만으로는</b> 프로그램의 전반적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자체평가체계를 대신할 수 없음을 주지해야 한다.</p> <p>프로그램은 창의적이고 실질적 자체평가체계를 갖추어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개선을 추구해야 하며, 아래 항목들에 대한 대응방식을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이 보유한 자체평가체계 개관</li> <li>■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제시된 자체평가방식과의 상관관계</li> <li>■ 프로그램 운영방안 및 종장기 발전계획과 제시된 자체평가방식과의 상관관계</li> <li>■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주요관점에 입각한 프로그램 교과운영 및 교육환경에 대한 교수진, 학생 및 졸업동문들의 의사 청취 및 반영 방안</li> <li>■ <b>주요 교과목의 강의평가 분석 결과 및 개선방안</b></li> <li>■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의 장점 및 향후 개선 발전방향</li> <li>■ 기타 자체평가체계 관련사항</li> </ul>
학위 및 교과과정	2.3 학위 및 교과과정	2.3 학위 및 교과과정

	<p>건축학교육의 교과과정은 졸업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 사고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p>	<p><b>인증기준</b></p> <p>건축학교육의 교과과정은 졸업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 사고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u>또한 모든 재학생(편입/전과 등 학생 포함)</u>은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고유의 필수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졸업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p> <p>특히, 편입/전과 등 학생의 전적대학 또는 타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학점에 대해 해당 이수 과목/시수가 프로그램 내 개설 교과목과 상호인정이 가능함을 증명해야 하며, 프로그램이 유지하고 있는 학사관리체계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p> <p>건인원이 인증 대상으로 하는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은 졸업 후 예비 건축사로서 건축사 자격취득 및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소정의 건축사 업무 실무수련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일반 4년제 고등교육과정 수준의 교육 이외에도 건축 전문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전문직 수행 및 업무개설에 필요한 전문지식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각 학위의 교과과정은 전공교육, 선택 및 일반교양 교육 등을 전제로 한 최소 총 5년간의 전일제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의 수준에 부여되는 학위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위명 : 건축학사, 영문 : Bachelor of Architecture (B.Arch)</li> <li>■ 학위명 : 건축학석사, 영문 : Master of Architecture (M.Arch)</li> </ul>
	<p>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서술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되는 학위에 대한 설명</li> <li>■ 교양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을 포함한 교과과정의 틀에 대한 설명</li> <li>■ 교과과정 이수 체계에 대한 도표 및 학생개개인의 교과과정 이수관리 체계</li> <li>■ 교과과정의 학년/수준별 목표</li> <li>■ 개별 교과목의 강의 항목과 평가 방법 (개별 교과목 교수요목은 부록에 첨부)</li> <li>■ 스튜디오 과목과 일반과목을 구분하여 각 과목별 내용과 상호 관계를 기재</li> <li>■ 각 과목별 이수학생/낙제생/재수강생에 대한 현황</li> </ul>	<p>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여되는 학위와 세부 설명</li> <li>■ 교양과목, 전공 필수/선택 교과목을 포함한 교과과정의 틀에 대한 설명</li> <li>■ 교과과정 이수 체계에 대한 도표</li> <li>■ 학생 개개인의 <u>학사관리 체계</u></li> <li>■ 교과과정의 학년/수준별 목표</li> <li>■ 개별 교과목의 강의 내용과 평가 방법 (개별 교과목 교수요목은 부록에 첨부)</li> <li>■ 스튜디오 교과목과 일반 교과목을 구분하여 각 교과목별 내용과 상호 관계</li> <li>■ 각 교과목별 이수학생/낙제생/재수강생 등에 대한 현황</li> </ul>
학생 정보	<p>2.4 학생정보</p> <p>프로그램은 적절한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선별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2.4 학생정보</p> <p><b>인증기준</b></p> <p>프로그램은 적절한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선별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는 (1) 학생에 대한 일반적 현황, (2) 학생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대한 명확한 정책보유 여부, (3) 각 단계별 입학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서술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목표 및 특성과 관련한 입학생 및 편입생 선발기준과 방법</li> <li>■ 대학원 프로그램의 경우, 입학생들의 학부교육 배경 및 일반적 현황</li> <li>■ 교수/학생 비율과 산출근거</li> <li>■ 지난 인증실사 이후 프로그램의 입학, 편입학 등의 지원율, 학생보유율, 졸업 까지의 시간 등에 관한 설명</li> <li>■ 전문학위 인증제도를 소개한 프로그램 안내책자의 배포 여부</li> <li>■ 학문적 또는 개인적 상담, 취업지도, 발전사항 평가, 인턴쉽(실무수련)에 대한 기회제공 등 학생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li> <li>■ 학생들의 현장답사, 캠퍼스 내·외부활동 참여기회 제공 증거</li> <li>■ 전체 학년(학기)당 정원, 등록학생, 편입학생수</li> <li>■ 전체 학년(학기)당 통과학생, 탈락학생수와 통과/탈락의 기준과 성적분포</li> </ul>	<p>프로그램 보고서는 (1) 학생에 대한 일반적 현황, (2) 학생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대한 명확한 정책보유 여부, (3) 각 단계별 입학 기준을 포함하여 아래 항목들에 대한 대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목표 및 특성과 관련한 <b>편입/전과 등 학생</b> 선발기준과 방법</li> <li>■ 대학원 프로그램의 경우, 입학생들의 학부교육 배경 및 일반적 현황</li> <li>■ 교수/학생 비율과 산출근거</li> <li>■ 지난 인증실사 이후(<b>최초 인증신청 프로그램의 경우 최근 5년 이내</b>) 프로그램의 입학, 편입학 등의 지원율, 학생보유율, 졸업까지의 기간 등에 관한 설명</li> <li>■ 전문학위 인증제도를 소개한 프로그램 안내책자의 배포 여부</li> <li>■ 학문적 또는 개인적 상담, 취업지도, 발전사항 평가, <b>실무적 경험에</b> 대한 기회 제공 등 학생지원 서비스에 대한 설명</li> <li>■ 학생들의 현장답사, 캠퍼스 내·외부활동 참여기회 제공 관련자료</li> <li>■ 전체 학년(학기)당 정원, 등록학생, 편입/전과 등 학생현황</li> <li>■ 전체 학년(학기)당 통과학생, 탈락학생수와 통과/탈락의 기준과 성적분포</li> </ul>
인적 자원	<p>2.5 인적자원</p> <p>프로그램은 건축학교육을 위해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하게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교수 정원,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한 교직원, 보조 직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행정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관리직, 도서사서 등이 필요하며 건축CAD 실, 모형제작실 등에 상시 근무 지원인력을 둘 것을 권장한다.</p> <p>교수들의 총 수업부담은 자신의 연구 및 학문을 위한 시간과 전문적 개발을 위한 실무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 실무 와 관계된 과목은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수 또는 충분한 교육자격을 갖춘 건축사들이 가르칠 것을 권장한다.</p> <p>특히 각 학기별 설계 스튜디오는 학생에 대해 충분한 개인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생 일인당 1주일에 40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수진을 구성하여야 한다.</p> <p>프로그램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서술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설계 스튜디오의 수강학생 수</li> <li>■ 설계 1학점 당 교육 시수 및 시간</li> <li>■ 교수의 수업부담</li> </ul>	<p>2.5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p> <p><b>인증기준</b></p> <p>프로그램은 건축학 전문학위 교과과정 운영과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인적자원과 운용체계를 갖추어야 한다.</p> <p>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설계 스튜디오의 <b>교수 대 수강학생 수의 비율</b></li> <li>■ 설계 1학점 당 교육시수 및 시간</li> <li>■ 교수의 수업부담 (<b>학부 및 대학원 수업 포함</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교수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름, 학력 및 주요 경력, 임용일, 직급 및 직위</li> <li>2. 담당 강좌 및 강의평가 결과</li> <li>3. 이력 및 최근 업적 (부록에 첨부)</li> </ol> </li> <li>■ 외부 강사 (설계스튜디오 및 강의, 초청 강연, 초청 크리티ك)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름, 학력 및 주요 경력</li> <li>2. 담당 강좌 및 강의평가 결과</li> </ol> </li> <li>■ <del>기술 및 행정 지원</del> 보조직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름, 임용일, 직급 및 직위</li> <li>2. 담당 업무</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교수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름, 학력 및 주요 경력, 임용일, 직급 및 직위</li> <li>2. 담당 강좌 (<b>학부 및 대학원 포함</b>)</li> <li>3. 이력 및 최근 업적 (부록에 첨부)</li> </ol> </li> <li>■ 외부 강사 (설계스튜디오 및 강의, 초청 강연, 초청 크리티ك) 현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름, 학력 및 주요 경력</li> <li>2. 담당 강좌</li> </ol> </li> <li>■ <b>프로그램 지원인력</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름, 임용일, 직급 및 직위</li> <li>2. 담당 업무</li> </ol> </li> </ul>
<b>물리적 자원</b>	<p>2.6 물리적 자원</p> <p>프로그램은 효율적인 건축학교육을 위해 적절한 물리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p> <p>프로그램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도면과 위치, 면적, 수량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 스튜디오 : 소 스튜디오로 분할되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며, 이용시간 동안 냉난방이 지원되는 구조</li> <li>■ 학생 개인 자리 및 랙커 :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학생 개인 자리 및 개인 랙커</li> <li>■ 도서관 혹은 도서실 : 학과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도서관 내에 설치된 경우도 가능</li> <li>■ 프로젝트 평가 및 전시실 : 학생 설계작품 발표, 평가, 전시 등의 기능 수행</li> <li>■ 강의실 : 대, 중, 소형의 강의실 필요. 대형 강의실은 A/V장비 및 타이터얼시설을 구비하여 워크숍, 세미나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구조여야 함</li> <li>■ 교수 연구실</li> <li>■ 컴퓨터 및 출력시설 :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적정한 컴퓨터 및 출력장비 수량과 소프트웨어 구비</li> <li>■ 모형제작실 : 다양한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공구 및 기계 장비 확보</li> <li>■ 모형촬영실 : 촬영용 조명시설과 배경용 스크린 혹은 커튼설비 구비</li> <li>■ 시청각 자료실 및 창고 :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 및 과제물 보관 및 각종 재료와 교육용 기자재 보관</li> <li>■ 학과사무실 및 학생지원시설</li> </ul>	<p>2.6 물리적 자원</p> <p><b>인증기준</b></p> <p>프로그램은 건축학 전문학위 교과과정 운영과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물리적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p> <p>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하여 <b>평면도(설계 스튜디오는 가구배치 포함)</b>과 위치, 면적, 수량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 스튜디오 수업과 개인 실기작업이 가능한 공간</li> <li>■ 설계 프로젝트 발표, 토의, 평가 및 전시가 가능한 공간</li> <li>■ 컴퓨터 교육 공간 및 출력시설</li> <li>■ 모형제작이 가능한 공간 및 시설</li> <li>■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및 기자재 현황</li> <li>■ 기타 지원시설 현황</li> </ul>

<b>정보 자원</b>	<p>2.7 정보 자원</p> <p>정보 자원이 학교의 설립목표, 세부계획, 교과과정과 전문적 연구 분야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p><del>중앙도서관 혹은 독립적인 전공도서관 자료는 인쇄, 시각, 전자 매체 등을 포함하며 그 규모, 범위, 내용, 최신자료, 과거자료, 활용성 등이 건축학 전문 학위 프로그램에 적절하여야 한다. 균형 잡힌 건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서적과 기타 지원 서적들과 함께 KDC (분류번호 540, 610) 또는 DDC(분류번호 690, 710, 720)로 분류되고 개별적 도서 분류번호를 가지는 건축전문 서적이 최소 5,000종 이상이 요구되며, 적절한 시각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시각 자료와 기타 비서적 자료들은 전체 건축교육의 일부분으로 고려되며 학생들은 이러한 자료에 직접적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del></p> <p>프로그램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서술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 가능한 도서관과 유형</li> <li>■ 각 도서관별 장서, 정기 간행물</li> <li>■ 각 도서관별 시각자료, 기타 비 도서자료</li> <li>■ 각 도서관별 전담 서서 유무(시간제 혹은 전일제)</li> <li>■ 각 도서관별 자료 검색 수단</li> <li>■ 각 도서관별 지속적으로 도서자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예산 지원 내용</li> </ul>	<p>2.7 정보자원</p> <p><b>인증기준</b></p> <p>프로그램은 건축학 전문학위 교과과정 운영과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정보자원을 갖추어야 한다.</p>
<b>재정 자원</b>	<p>2.8 재정 자원</p> <p>프로그램은 소속 대학교로부터 적절한 기관차원의 지원과 재정지원을 받아야 한다.</p> <p>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서술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예산, 기증, 장학금</li> <li>■ 대학 내 비교가 가능 한 다른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학생 1인당 연간 경비에 대한 비교 자료</li> </ul>	<p>2.8 재정자원</p> <p><b>인증기준</b></p> <p>프로그램은 소속 대학교로부터 건축학 전문학위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적절한 기관차원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한다.</p> <p>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예산, 기증, 장학금</li> <li>■ 기관 내 비교가 가능 한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부생과 <b>대학원생(대학원 프로그램에 한함)</b> 1인당 연간 경비에 대한 비교 자료</li> </ul>
<b>연구 활동</b>	<p>2.9 연구활동</p> <p>프로그램은 그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설명하고 그 성과를 제시하여야 한다.</p>	<p>2.9 연구활동</p> <p><b>인증기준</b></p> <p>프로그램은 그 교육목표와 관련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설명하고 그 성과를 제시하여야 한다.</p>

	<p>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서술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비가 제공되는 프로젝트 목록</li> <li>■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관련된 연구/설계 활동과 인증 대상 교과과정 및 설명 그리고 담당과목과의 관계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연구결과 반영여부</li> </ul>	<p>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비가 제공되는 프로젝트 목록</li> <li>■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관련된 연구/설계 활동과 인증 대상 교과과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담당과목과의 연계성 및 연구결과 반영여부</li> </ul>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학생수행 평가기준	<p>2.10 학생수행평가기준(SPC)</p> <p>학생수행평가기준은 커뮤니케이션, 문화적 맥락, 설계, 기술, 실무의 5개 영역에 걸쳐 모두 3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 기술과 지식으로 시작하여 전문 기술과 지식을 포괄하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항목으로 마무리 된다.</p> <p>학생수행평가기준은 건축사 자격 등록으로 이어지는 실무수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로그램은 모든 졸업생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고유의 필수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 항목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편입학생 및 전과학생 등 그리고 타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해 인정학점이 주어진 경우 해당 과목들이 프로그램 내 개설 교과목과 상호인정 가능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이 유지하고 있는 편입생 및 전과학생들의 학사관리체계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p> <p>학생수행평가기준은 다음 항목별로 3개 수준의 성취도를 요구한다.</p> <p><b> 및</b></p> <p><b>학생수행 평가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l>인지한다 : 사실, 정의, 개념, 법칙, 방법, 과정, 혹은 환경을 포함하는 특정 정보에 친숙해야 한다. 학생은 이 정보를 바꾸어 말하거나 요약할 필요는 없지만, 이들 정보를 옳게 기억할 수는 있어야 한다.</del></li> <li>■ 이해한다 : 정보를 습득하고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이 정보를 다른 자료와 연관시키거나 내포된 충분한 의미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바꾸어 말하거나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li> <li>■ 할 수 있다(능력) : 과업의 성취를 위해 특정 정보를 업무완수에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학생은 정확하게 상황에 맞는 정보를 선택하고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p>프로그램은 건인원이 제시한 기준 항목의 충족여부를 자체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교과과정의 목표 및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동시에 자체 평가한다. 건인원은 프로그램이 보유한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시스템을 고안하여 학생수행평가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장려하며, 성공적 방법들은 모범사례로써 존중될</p>	<p><b>Part III. 프로그램 학습성과</b></p> <p>2.10 학생수행평가기준(Student Performance Criteria)</p> <p>학생수행평가기준은 커뮤니케이션, 문화적 맥락, 설계, 기술, 실무의 5개 영역에 걸쳐 모두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 지식으로부터 전문 지식과 기술을 포괄하는 건축사의 사회적 <u>역할과 책임에</u> 관한 항목으로 마무리 된다.</p> <p>학생수행평가기준은 건축사 <b>자격 취득 및 등록으로</b> 이어지는 실무수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로그램은 모든 졸업생이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고유의 필수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 항목들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편입 및 전과학생 등 그리고 타 프로그램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 인정학점이 주어진 경우, 해당 교과목들이 프로그램 내 개설 교과목과 상호인정 가능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이 유지하고 있는 편입 및 전과학생 등의 학사관리체계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p> <p>학생수행평가기준은 다음 항목별로 <b>2개 수준의 성취도를</b> 요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해한다</b> : 정보를 습득하고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이 정보를 다른 자료와 연관시키거나 내포된 충분한 의미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바꾸어 말하거나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li> <li>■ <b>할 수 있다(능력)</b> : 과업의 성취를 위해 특정 정보를 업무완수에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학생은 정확하게 상황에 맞는 정보를 선택하고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p>프로그램은 건인원이 제시한 기준 항목의 충족여부를 자체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교과과정의 목표 및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동시에 자체 평가한다. 건인원은 프로그램이 보유한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시스템을 고안하여 학생수행평가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장려하며, 성공적 방법들은 모범사례로써 존중될</p>

<p>것이다.</p> <p>학생수행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의 핵심 부분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수행평가기준에 따른 과목 설치 및 과목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li> <li>■ 설치된 과목들을 통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설명</li> <li>■ 필수과목들과 해당되는 학생수행평가기준들을 상호교차 확인하여 보여주는 도표</li> </ul> <p><b>[커뮤니케이션]</b></p> <p>01. 구두 및 문서 표현과 외국어 구사 상황과 상대에 맞추어 건축적 아이디어를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적정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p> <p>02. 도서작성 및 발표 능력 <del>각종 건축도서 및 보고서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적절하게 발표 할 수 있다.</del></p> <p>03. 지도력 <del>건축행위에 관련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협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법론 및 지도력에 대해서 인지한다.</del></p> <p>04. 다양한 미디어 활용 능력 건축적 아이디어를 스케치, 도서, 모형, 디지털 표현형식 등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정보들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p> <p><b>[문화적 맥락(역사.행태.환경)]</b></p> <p>05. 건축과 과학 및 예술 건축과 과학 및 예술의 관계를 이해한다.</p> <p>06. 세계 건축사와 전통 세계의 건축 역사와 전통의 다양성을 이해한다.</p> <p>07. 한국 건축사와 전통 우리나라 건축의 고유한 사상과 문화적 전통을 이해한다.</p>	<p>것이다.</p> <p>학생수행평가기준에 대한 부분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의 핵심 부분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수행평가기준에 따른 교과목 설치 및 교과목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li> <li>■ 개설 교과목들을 통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설명</li> <li>■ 필수 교과목들과 해당되는 학생수행평가기준들을 상호교차 확인하여 보여주는 도표</li> </ul> <p><b>[커뮤니케이션]</b></p> <p>01. 구두 및 문서 표현 건축적 아이디어를 상황과 상대에 맞추어 <u>한국어와 외국어로 표현할 수 있다.</u></p> <p>"도서작성 및 발표능력" 01, 02, 18 항목으로 통합</p> <p>"지도력" 28번 항목으로 통합</p> <p>02. 다양한 표현 능력 건축적 아이디어를 스케치, 모형, 도면, 글, 디지털 등 다양한 표현형식을 사용하여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p> <p><b>[문화적 맥락(역사.행태.환경)]</b></p> <p>03. 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 건축과 과학기술 및 예술의 관계를 이해한다.</p> <p>04. 세계 건축사와 전통 세계의 건축 역사와 전통의 다양성을 이해한다.</p> <p>05. 한국 건축사와 전통 우리나라 건축의 고유한 사상과 문화적 전통을 이해한다.</p>
--	---

<p>08. 건축과 사회 건축의 역사적, 사회적, 지역적, 정책적 상관관계 및 상호영향 등을 이해한다.</p> <p><del>09. 선례의 활용 건축, 도시, 조경 등의 선례들을 비평적 시각으로 건축적 논의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del></p> <p>10. 인간행태 물리적 환경과 인간 행동 간의 관계를 밝혀 주는 이론과 방법을 이해한다.</p> <p>11.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건축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해한다.</p>	<p>06. 건축과 사회 건축의 역사적, 사회적, 지역적, 정책적 상관관계 및 상호영향 등을 이해한다.</p> <p><b>"선례의 활용" 10번 항목으로 통합</b></p> <p>07. 인간행태 물리적 환경과 인간 행동 간의 관계를 밝혀 주는 이론과 방법을 이해한다.</p> <p>08.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건축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해한다.</p>
<p><b>[설 계]</b></p> <p>12. 형태 및 공간구성 건축 및 도시설계의 기초를 이루는 2차원과 3차원 형태 및 공간구성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건축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p> <p>13. 분석 및 프로그램 작성 설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종합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p> <p><del>14. 협력 작업 개인의 재능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역할을 인지하고, 설계팀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서 책임자로서 혹은 팀의 일원으로 작업할 때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할 수 있다.</del></p> <p>15. 대지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 프로젝트와 대지에 주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설계에 구체적으로 반영 할 수 있다.</p> <p>16. 대지분석 및 대지조성 대지의 자연적, 환경적, 기후적, 인공적 조건 등의 특성과 주어진 설계조건을 파악하고 외부 공간 계획 및 대지조성 계획을 할 수 있다.</p> <p>17. 무장애 설계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건물사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설계할 수</p>	<p><b>[설 계]</b></p> <p>09. 형태 및 공간구성 건축 및 도시설계의 기초를 이루는 2차원과 3차원 형태 및 공간구성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건축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p> <p>10. 분석 및 프로그램 작성 설계에 관련된 <b>선례 및</b> 다양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종합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p> <p><b>"협력작업" 삭제</b></p> <p>11. 대지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 프로젝트와 대지에 주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의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설계에 구체적으로 반영 할 수 있다.</p> <p>12. 대지조성 대지의 자연적, 환경적, 기후적, 인공적 조건 등의 특성과 주어진 설계조건을 파악하여 외부 공간을 포함한 대지조성 계획을 할 수 있다.</p> <p>13. 무장애 설계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b>건물 이용자의</b> 요구를 고려하여 설계할</p>

<p>있다.</p> <p><b>18. 안전 및 방재 설계</b> 인명안전 및 방재의 원리를 바탕으로 건물 내외부에 적합한 소화, 피난, 방재 등 의 시스템을 선정하여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p> <p><b>19. 건물시스템 통합설계</b> 건물의 구조, 외피, 구축방법, 기계, 전기 등의 설비 요소들이 통합되는 건물 시 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p> <p><b>20. 증개축, 보수, 유지관리 설계</b> 증축, 개축, 보수, 유지관리 등 기존건물의 형태 또는 기능을 변경하거나 유지 관 리하는 문제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판단하여 설계할 수 있다.</p> <p><b>21. 주거지계획,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b> 주거지계획,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비평적 시각으로 도시 설계안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하여 설계를 할 수 있다.</p> <p><b>22. 기술도서 작성</b> <del>설계의 초기단계부터 완결하기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단계 별로 제안하는 목적으로 맞게 기술적으로 정확한 설명과 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del></p> <p><b>23. 종합설계</b> 설계의 모든 단계에 걸쳐 필요한 요소들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p> <p><b>[기술]</b></p> <p><b>24. 구조원리</b> 구조에 관한 기초이론과 그 역학적 원리를 이해한다.</p> <p><b>25. 구조 시스템</b> 다양한 건축구조시스템의 특성과 적용방법을 이해한다.</p> <p><b>26. 지속가능한 환경조절</b> 지속가능한 환경조절방식 및 순환체계의 과정을 이해한다.</p> <p><b>27. 환경 시스템</b> 열, 빛, 음, 공기, 에너지 관리 등을 포함한 환경 시스템에 관한 기본 원리 및 성 능평가방법을 이해한다.</p>	<p>수 있다.</p> <p><b>14. 안전 및 피난 설계</b> <u>인명의 안전 및 피난 원리를</u> 바탕으로 안전, 피난 등을 고려한 설계안을 작성할 수 있다.</p> <p><b>15. 건물시스템 통합설계</b> 건물의 구조, 외피, 구축방법, 기계, 전기 등의 설비 요소들이 통합되는 건물시스 템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p> <p><b>16. 증개축, 보수설계</b> 증축, 개축, 보수 등 기존건물의 형태 또는 기능을 변경하거나 보수하는 문제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판단하여 설계할 수 있다.</p> <p><b>17. 건축과 도시설계</b> 주거지계획,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비평적 시각으로 도시 설계안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설계에 적용할 수 있다.</p> <p>"기술도서 작성" 18번 항목으로 통합</p> <p><b>18. 종합설계</b> 설계의 모든 단계에 걸쳐 필요한 요소들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 며 <u>정확한 설명과 도서작성을 할 수 있다.</u></p> <p><b>[기술]</b></p> <p><b>19. 구조원리</b> 구조에 관한 기초이론과 그 역학적 원리를 이해한다.</p> <p><b>20. 구조 시스템</b> 다양한 건축구조시스템의 특성과 적용방법을 이해한다.</p> <p><b>21. 지속가능한 환경조절</b> 지속가능한 환경조절방식 및 순환체계의 과정을 이해한다.</p> <p><b>22. 환경 시스템</b> 열, 빛, 음, 공기, 에너지 관리 등을 포함한 환경 시스템에 관한 기본 원리 및 성 능평가방법을 이해한다.</p>
--	---

<p>28. 설비 시스템 기계, 전기, 통신, 방재 등을 포함하는 건물 시스템을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되는 원리를 이해한다.</p> <p>29. 컴퓨터응용기술과 통합설계 설계단계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응용기술 및 통합설계 방법을 이해한다.</p> <p>30. 시공재료 및 부품 시공재료, 구성부재, 조립부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원리, 관습, 규격, 적용, 제한 등을 이해한다.</p> <p>31. 재활용 및 유해방지 시공재료 및 건축 폐기물의 재생 가능성과 유해성 및 규제 방식을 이해한다.</p> <p>32. 시공절차 및 건설관리 시공에 필요한 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공절차 및 건설관리에 대하여 이해한다.</p>	<p>23. <b>건축설비</b> 시스템 기계, 전기, 통신, 방재 등을 포함하는 <b>건축설비</b> 시스템을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되는 원리를 이해한다.</p> <p>24. 컴퓨터응용기술 설계단계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응용기술을 이해한다.</p> <p>25. <b>건축재료 및 재활용</b> <b>건축재료</b>, 구성부재, 조립부품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의 생산 및 사용 원리, 관습, 규격, 적용, 제한 등을 파악하고 건축폐기물의 재생가능성과 유해성 및 규제 방식을 이해한다.</p> <p>"재활용 및 유해방지" 25번 항목으로 통합</p> <p>26. 시공절차 및 건설관리 시공에 필요한 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공절차 및 건설관리에 대하여 이해한다.</p>
<p><b>[실무]</b></p> <p>33.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 건축주와 사회에 대한 건축사의 책임과 전문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이해한다.</p> <p>34.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건축사의 역할 수주, 계약, 기획 및 계획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사 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 거주 후 평가(POE), 유지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의 건축사의 역할을 이해한다.</p> <p>35. 실무관련 도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전문용역을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도서유형을 인지한다.</p> <p>36. 건축법규 공공의 안전 및 복지, 재산권, 건축법규, 기타 설계, 시공, 실무에 관련된 제반 법령에 대해 이해하며 또한 이와 관련된 건축사의 법적 책임을 이해한다.</p>	<p><b>[실무]</b></p> <p>27.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 건축주와 사회에 대한 건축사의 책임, <b>권리와 의무</b> 그리고 전문인으로서의 직업 윤리를 이해한다.</p> <p>28. 프로젝트 수행과 건축사의 역할 프로젝트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b>관련분야 전문가와의 협력 및 조정,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b> 건축사의 역할을 이해한다.</p> <p>"실무관련 도서" 30번 항목으로 통합</p> <p>29. 건축법규 공공의 안전 및 복지, 재산권, 건축법규, 기타 설계, 시공, 실무에 관련된 제반 법령에 대해 이해하며 또한 이와 관련된 건축사의 법적 <b>책임과 의무</b>를 이해한다.</p>

	<p>37.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건축설계 실무가 행해지는 사무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과 방법을 이해한다.</p>	<p>30.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과 관리 건축설계 실무가 행해지는 사무소의 운영 및 관리 그리고 <u>실무관련 도서에 대해 이해한다.</u></p>
인증절차	<p>4.1 인증 신청</p> <p>건인원의 인증부여는 대학원 또는 단과대학 내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 단위이다. 교육기관이 인증 취득 또는 유지를 전제로 운영하는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은 건인원이 제시한 인증규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프로그램에 소속된 모든 재학생들이 적용대상이어야 한다. 프로그램 인증 신청 요건은 해당 프로그램 내 재학생들에게 수여되는 학위가 국가(국내 또는 국외)가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의한 최소 총 5년간의 전일제 교육을 필한 자의 수준에 부여되는 학위어야 한다. 따라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최소 5년제 학부 학위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개설이후 최초인증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전체를 이수한 첫 졸업생이 배출되기 직전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 2011년 2월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경우 2010년 가을학기부터 신청가능)</p>	<p>4.1 인증 신청</p> <p>건인원이 인증을 부여하는 대상은 대학원 또는 단과대학 내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이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단위이다. 프로그램 인증 신청 요건은 신청 프로그램 내 재학생들에게 수여되는 학위가 국가(국내 또는 국외)가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의한 최소 총 5년간의 전일제 교육을 이수한 자의 수준에 부여되는 학위어야 한다. 따라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최소 5년 전일제 학부 학위 또는 2년 이상 전일제 대학원 학위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p> <p><b>1. 5년제 건축학교육 전문학사학위 프로그램</b>  <b>2. 학·석사 연계 또는 통합 건축학교육 전문석사학위 프로그램</b>  <b>3. 대학원 건축학교육 전문석사학위 프로그램</b></p> <p>교육기관이 인증 취득 또는 유지를 전제로 운영하는 위 모든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건인원이 제시하고 있는 인증기준을 고유의 방법으로 만족시키고 있음을 제시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에 소속된 모든 재학생들이 적용대상이어야 한다.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개설이후 최초인증을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전체를 이수한 첫 졸업생이 배출되기 직전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 2015년 2월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경우 2014년 가을학기부터 신청가능)</p>
참관인	<p>4.3.4 참관인</p> <p>건인원은 인증실사 업무의 투명성 유지와 예비 실사팀 위원의 육성을 위한 취지로 인증신청 프로그램에서 1명의 참관인을 추천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 프로그램에서 참관인을 추천할 계획이 있다면, 인증실사에 앞서 실사팀장과 접촉하여 실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사팀장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건인원에 명단을 통보한다. 참관인은 인증여부 사안을 결정짓는 최종 실사팀 회의를 제외한 모든 인증실사 업무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역할 및 참여범위는 실사팀장이 결정한다. 건인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차원에서 향후 실사팀위원 예정자 또는 인증신청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관계자</li> <li>■ 건인원 회원단체 및 협력기관으로부터의 추천인</li> <li>■ 외국인 방문자 및 국제 협의체 관계자</li> <li>■ 건인원 자문 또는 직원</li> </ul>	<p>4.3.4 참관인</p> <p>건인원은 예비 실사팀 위원 육성을 위한 취지로 다음에 해당하는 참관인을 추천 할 수 있다. 참관인은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실사팀 회의를 제외한 모든 인증실사 업무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역할 및 참여범위는 실사팀장이 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차원에서 향후 실사팀위원 예정자 또는 인증신청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관계자</li> <li>■ 건인원 회원단체 및 협력기관으로부터의 추천인</li> <li>■ 외국인 방문자 및 국제 협의체 관계자</li> <li>■ 건인원 자문 또는 직원</li> </ul>

	<p>■ 건인원 자문 또는 직원</p> <p>인증실사에서 참관인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건인원은 신청 프로그램의 의향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단, 국가 간 인증제도 상호인정 협의체에서의 요청 및 이와 관련된 참관인 배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 프로그램에 협조요청을 통해 별도의 참관인 배정을 건인원이 결정하도록 한다.</p> <p>참관인의 이력서는 건인원, 실사팀장, 신청 프로그램에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참관인은 신청 프로그램과의 상호합의에 의해 추천되고 실사팀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p> <p>참관인 제도는 인증실사 공식 절차의 일부분으로서, 실사팀의 업무수행과 일정을 같이 하여 실사팀의 업무에 참석해야 한다. 즉, 인증실사 사전 실무교육과 실사시 인증실사 업무 오리엔테이션 등을 포함하는 모든 실사팀 안건에 참여한다. 인증실사 기간 중 개인 일정이나 임의의 행동으로 실사팀의 업무를 훼손할 수 없다. 참관인은 인증실사과정에서 실사팀장과 실사팀 위원, 신청 프로그램에 의사 표현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항목별 충족사항 여부를 비롯한 인증실사 과정에서의 공식 결정사안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없다.</p> <p>실사팀장은 인증실사 시작회의에서 참관인의 역할 및 의무 그리고 참여정도를 결정하여 반드시 주지시켜야 하며, 프로그램을 위한 일방적 응호의견 주장이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모든 현안과 관련 정보를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등의 인증실사 의례 위반으로 인증실사 업무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사팀장은 참여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p> <p>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사업기간(학기) 내에 타 인증실사팀 위원 또는 참관인으로 위촉된 경우</li> <li>■ 업무상 신청 프로그램과 계약관계에 있거나 혹은 향후 계약관계를 가질 예정인 경우</li> <li>■ 건인원 인증실사팀 팀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li> </ul>	<p>또한 인증실사 업무의 투명성 유지와 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인증신청 프로그램에서 1명의 참관인을 추천할 것을 권고한다. 신청 프로그램이 참관인을 추천할 계획이 있다면, 인증실사에 앞서 실사팀장과 접촉하여 실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사팀장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건인원에 명단을 통보한다.</p> <p>인증실사에서 참관인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건인원은 신청 프로그램의 의향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단, 국가 간 인증제도 상호인정 협의체에서의 요청 및 이와 관련된 참관인 배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 프로그램에 협조요청을 통해 별도의 참관인 배정을 건인원이 결정하도록 한다.</p> <p>참관인의 이력서는 건인원, 실사팀장, 신청 프로그램에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참관인은 신청 프로그램과의 상호합의에 의해 추천되고 실사팀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p> <p>참관인 제도는 인증실사 공식 절차의 일부분으로서, 실사팀의 업무수행과 일정을 같이 하여 실사팀의 업무에 참석해야 한다. 즉, 인증실사 사전 실무교육과 실사시 인증실사 업무 오리엔테이션 등을 포함하는 모든 실사팀 안건에 참여한다. 인증실사 기간 중 개인 일정이나 임의의 행동으로 실사팀의 업무를 훼손할 수 없다. 참관인은 인증실사과정에서 실사팀장과 실사팀 위원, 신청 프로그램에 의사 표현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항목별 충족사항 여부를 비롯한 인증실사 과정에서의 공식 결정사안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없다.</p> <p>실사팀장은 인증실사 시작회의에서 참관인의 역할 및 의무 그리고 참여정도를 결정하여 반드시 주지시켜야 하며, 프로그램을 위한 일방적 응호의견 주장이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모든 현안과 관련 정보를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등의 인증실사 의례 위반으로 인증실사 업무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사팀장은 참여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p> <p>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사업기간(학기) 내에 타 인증실사팀 위원 또는 참관인으로 위촉된 경우</li> <li>■ 업무상 신청 프로그램과 계약관계에 있거나 혹은 향후 계약관계를 가질 예정인 경우</li> <li>■ 건인원 인증실사팀 팀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li> </ul>
재심	<p>4.4.7 재심</p> <p>인증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해당 프로그램은 인증결정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재심신청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재심 신청은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의 일시적 정지나 인증거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p>	<p>4.4.7 재심</p> <p>인증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해당 프로그램은 인증 결정이 나온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인원 이사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서류를 내고 재심신청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재심 신청은 <u>3년 인증</u>,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의 일시적 정지나 인증거부인 경우에 가능하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연례 보고서</b></p>	<p><b>4.5.2 연례보고서 내용 및 절차</b></p> <p>연례보고서의 제출마감은 매년 2월 말일까지이며 인증유지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연장을 위한 기한연장신청은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인증을 부여받은 연도 2월부터 적용된다. 또한 계속인증을 위한 인증실사가 예정된 해당 연도도 제출적용을 받는다.</p> <p>연례보고서 제출이 없거나 충실했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증위원회의는 이사회 인준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에게 인증유예를 명할 수 있다.</p>	<p><b>4.5.2 연례보고서 내용 및 절차</b></p> <p>연례보고서의 제출마감은 <b>업무일 기준으로</b> 매년 2월 말일까지이며 인증유지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b>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제출마감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제출마감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사유를 작성하여 건인원에 제출</b> 기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2주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제출연장 마감기한 이후에는 더 이상 제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연례보고서 제출은 인증을 부여받은 연도 2월부터 적용되고 계속인증을 위한 인증실사가 예정된 해당 연도도 제출적용을 받는다.</p> <p><b>기한 내에</b> 연례보고서 제출이 없거나 <b>심사결과</b> 충실했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인증 프로그램의 경우 인증위원회의는 <b>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심사결과와 방문평가 결정을 통보하고 인증사업단에 방문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b>. 인증사업단은 사안에 따라 실사팀 규모를 결정하고 해당 프로그램과 방문평가 일정을 협의한다. 방문평가 방법 및 절차는 “<b>4.6 집중평가 절차</b>”에 준한다. 건인원은 방문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회 인준을 거쳐 해당 프로그램에게 인증유예를 명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인증기준 개정절차</b></p>	<p><b>4.9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절차 및 인증사업 연례 검토</b></p> <p><b>4.9.1 인증기준 개정</b></p> <p>(1) 개정작업의 주체</p> <p>(2) 개정 절차</p>	<p><b>4.9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및 인증사업 연례 검토</b></p> <p><b>4.9.1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b></p> <p>(1) 개정 원칙</p> <p>(2) 개정 공개토론회</p> <p>(3) 개정작업의 주체</p> <p>(4) 정규개정 절차</p> <p>(5) 특별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인원의 인증기준 및 절차의 개정은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국내외 관련제도(법규, 규정 등)의 변화 등에 의해 긴급하게 반영해야 할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안건이 있을 경우, 건인원 원장 발의로 인증기준 및 절차에 대한 특별 부분개정을 할 수 있다.</li> <li>■ 특별 부분개정안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건인원 주최의 공청회(의견수렴)를 거쳐야 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효된다.</li> <li>■ 건인원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개정안은 프로그램에 개별 공지되며 건인원 홈페이지에 게재한다.</li> </ul>

	부록 1. 신설	부록 1. 인증후보자격 및 인증신청 심사기준										
부 록	<table border="1" data-bbox="1191 223 2081 1266">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심사 기준</th> </tr> <tr> <th>인증후보자격신청</th> <th>인증신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191 330 1258 799">반 려 항 목</td><td data-bbox="1191 330 1655 799"> <p style="text-align: center;"><b>반려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후보자격 신청자격의 부적합</li> <li>- 소속대학 내에서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의 독립성</li> <li>-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교과과정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학사관리 미흡으로 학생 개개인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li> <li>- 주의를 요하는 항목 중 다수가 지적되고, 지적사항이 후속 인증신청 심사까지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li> <li>- 부가적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경우</li> <li>- 지난 인증후보자격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 프로그램에 한함)</li> </ul> </td><td data-bbox="1655 330 2081 7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 신청자격의 부적합</li> <li>- 인증후보자격신청 심사 반려항목</li> <li>- 지난 인증후보자격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항목 및 인증신청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주의를 요하는 항목 중 다수가 지적되고, 지적사항이 후속 인증실사까지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li> </ul> </td></tr> <tr> <td data-bbox="1191 799 1258 1266">주 의 를 요 하 는 항 목</td><td data-bbox="1191 799 1655 1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및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과과정 운영 미흡</li> <li>-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사관리 체계 미흡 (체계적 교과과정 이수)</li> <li>- 편입/전과/전환 등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기준 미흡</li> <li>- 교과목 교육내용과 학생수행평가기준 (SPC)과의 상관관계 미흡</li> <li>- 학생정보 미흡</li> <li>-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 미흡</li> <li>- 물리적 자원 미흡</li> <li>- 정보자원 미흡</li> <li>-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li> <li>- 지난 인증후보자격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 미흡(재신청 프로그램에 한함)</li> </ul> </td><td data-bbox="1655 799 2081 1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후보자격 심사의 주의를 요하는 항목</li> <li>-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및 교육목표에 의한 특성화 교육과정 세부계획 미흡</li> <li>- 지난 인증후보자격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항목 및 인증신청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 미흡</li> <li>-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li> </ul> </td></tr> </tbody> </table>	구 분	심사 기준		인증후보자격신청	인증신청	반 려 항 목	<p style="text-align: center;"><b>반려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후보자격 신청자격의 부적합</li> <li>- 소속대학 내에서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의 독립성</li> <li>-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교과과정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학사관리 미흡으로 학생 개개인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li> <li>- 주의를 요하는 항목 중 다수가 지적되고, 지적사항이 후속 인증신청 심사까지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li> <li>- 부가적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경우</li> <li>- 지난 인증후보자격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 프로그램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 신청자격의 부적합</li> <li>- 인증후보자격신청 심사 반려항목</li> <li>- 지난 인증후보자격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항목 및 인증신청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주의를 요하는 항목 중 다수가 지적되고, 지적사항이 후속 인증실사까지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li> </ul>	주 의 를 요 하 는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및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과과정 운영 미흡</li> <li>-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사관리 체계 미흡 (체계적 교과과정 이수)</li> <li>- 편입/전과/전환 등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기준 미흡</li> <li>- 교과목 교육내용과 학생수행평가기준 (SPC)과의 상관관계 미흡</li> <li>- 학생정보 미흡</li> <li>-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 미흡</li> <li>- 물리적 자원 미흡</li> <li>- 정보자원 미흡</li> <li>-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li> <li>- 지난 인증후보자격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 미흡(재신청 프로그램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후보자격 심사의 주의를 요하는 항목</li> <li>-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및 교육목표에 의한 특성화 교육과정 세부계획 미흡</li> <li>- 지난 인증후보자격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항목 및 인증신청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 미흡</li> <li>-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li> </ul>
구 분	심사 기준											
	인증후보자격신청	인증신청										
반 려 항 목	<p style="text-align: center;"><b>반려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후보자격 신청자격의 부적합</li> <li>- 소속대학 내에서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의 독립성</li> <li>-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교과과정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학사관리 미흡으로 학생 개개인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li> <li>- 주의를 요하는 항목 중 다수가 지적되고, 지적사항이 후속 인증신청 심사까지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li> <li>- 부가적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경우</li> <li>- 지난 인증후보자격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 프로그램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 신청자격의 부적합</li> <li>- 인증후보자격신청 심사 반려항목</li> <li>- 지난 인증후보자격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항목 및 인증신청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주의를 요하는 항목 중 다수가 지적되고, 지적사항이 후속 인증실사까지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li> </ul>										
주 의 를 요 하 는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및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과과정 운영 미흡</li> <li>-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사관리 체계 미흡 (체계적 교과과정 이수)</li> <li>- 편입/전과/전환 등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기준 미흡</li> <li>- 교과목 교육내용과 학생수행평가기준 (SPC)과의 상관관계 미흡</li> <li>- 학생정보 미흡</li> <li>- 인적자원 및 운용체계 미흡</li> <li>- 물리적 자원 미흡</li> <li>- 정보자원 미흡</li> <li>-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li> <li>- 지난 인증후보자격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 미흡(재신청 프로그램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후보자격 심사의 주의를 요하는 항목</li> <li>-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및 교육목표에 의한 특성화 교육과정 세부계획 미흡</li> <li>- 지난 인증후보자격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항목 및 인증신청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 미흡</li> <li>-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li> </ul>										

<b>부 록</b>	<p>부록 2. 전형적인 인증실사 일정 및 안건</p> <p>부록 3. 학생성과물 유형</p> <p>부록 4. 인증심사 진행 점검표</p> <p>부록 5. 실사팀 인증실사 오리엔테이션</p> <p>부록 6. 신설</p>	<p>부록 6. 인증심사 강의계획서 예시</p> <p>모든 교과목들의 강의 계획서 양식은 인증심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양식으로서, 실사팀 작업실의 교과목 성과물전시에 비치되어야 한다. 통일된 규격과 내용으로 인증실사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개설 중인 모든 교과목들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강의 계획서가 재학생들에게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p> <p>기재 내용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며, 분량은 한 교과목당 A4 용지 2매 이내로 제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목명과 교과번호(필요시) 학점, 시간/주, 강의 장소</li> <li>■ 담당 교수명 (과거 2년 동안 담당했던 교수명을 포함하여 기재함)</li> <li>■ 개설되는 주기 (예시 : 매학년 1학기 개설 또는 매학기 1, 2학기 개설 등)</li> <li>■ 교과목 개요</li> <li>■ 교육목표</li> <li>■ 건인원 학생수평가기준 관여 항목</li> <li>■ 주별 강의계획</li> <li>■ 성적평가기준 및 방식</li> <li>■ 선이수 필수과목 (예시 : 건축설계3을 이수하기 위해 건축설계1~2를 기재함)</li> <li>■ 필수교재 및 참고문헌</li> </ul>
------------	--	--

부록 7. 신설	<p><b>부록 7. 인증기준 및 절차 용어집</b></p> <p>용어 (Glossary)</p> <p><b>건인원 (KAAB)</b>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을 줄여 부르는 말</p> <p><b>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 (APR : Architectural Program Report)</b>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와 교육의 질적 개선체계 그리고 교육여건 및 자원 등 프로그램 운영의 전반적 교육환경을 종합 기술하는 보고서. 인증실사팀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증실사를 진행한다.</p> <p><b>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 (Professional Degree Program in Architecture)</b> 건축 전문직종에서 건축전문자격제도와 연계된 건축전문가 양성 목적의 교육과정으로 일반적인 학술학위 목적의 교육과정과 구분되는 학위과정</p> <p><b>계속교육 (Continuing Education)</b> "실무교육" 참조</p> <p><b>계속인증 (Continuous Accreditation)</b> 인증을 취득한 프로그램이 인증의 효력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여받은 인증기간을 갱신하는 절차</p> <p><b>긍정적 항목 (Conditions Well Met)</b> 평가항목이 대학과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특성에 잘 부합하고 관련 학생 성과물이 우수하여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평가된 항목</p> <p><b>동급자간 평가방식 (Peer Review Process)</b> 인증심사 및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호 동등한 지위와 입장에서 참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심사방식</p>
----------	--

	<p><b>등록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b>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축사</p> <p><b>부정적 항목 (Conditions Not Met)</b> 평가항목에 대한 학생성과물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반드시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p> <p><b>설계 스튜디오 (Architectural Design Studio)</b> 건축 설계를 하기위한 실기작업실</p> <p><b>성과중심의 평가 (Outcome-based Evaluation)</b> 프로그램의 인적, 물적 자원 등 투입과 관련한 기준과 교육환경에 의한 평가를 지양하고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결과로서 나타난 최종성과물을 통해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방식</p> <p><b>실무교육 (Professional Practice Education)</b>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p> <p><b>실무수련과정 (Intern Development Program)</b> 건축사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건인원의 인증을 받은 건축학 학위과정에서 건축사법이 정하는 일정 학기 이상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건축사에게서 체계적으로 실무에 관한 수련교육을 받는 과정</p> <p><b>실사팀 작업실 (Team Room)</b> 인증을 신청한 프로그램의 모든 학생 성과물과 교과목 관련 자료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련한 자료를 전시하고, 실사팀이 인증실사 기간 중에 대부분의 업무를 보는 작업실</p>
--	---

	<p><b>실사팀보고서 (VTR : Visiting Team Report)</b>      인증실사팀이 프로그램을 방문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보고서. 이는 인증을 결정하는 최종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신청 프로그램은 보고서에 명시된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프로그램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용도로 사용된다.</p> <p><b>연례보고서 (Annual Report)</b>      인증을 받은 모든 프로그램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프로그램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실사팀보고서에서 지적된 부족사항에 대한 대응으로 개선 계획 및 성과 등을 매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건인원은 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송부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며, 프로그램의 자원관련 자료의 누적 및 통계분석을 통해 국내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b>이사회 인증최종결과 인준 (Rectification of the Terms of Accreditation)</b>      인증위원회의 인증최종심의 결과에 대해 이사회가 최종 인정하는 행위</p> <p><b>인증 거부/철회 (Reject/Revocation of Accreditation)</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로 인증을 신청한 프로그램이 제출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의 주요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인증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인증실사 기간 중에 시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할 때 부여하는 인증의 종류. 계속인증 프로그램의 경우는 부여된 인증이 철회된다.</li> <li>조건부 2년 인증 또는 3년 인증을 부여받은 프로그램이 각 인증 기간의 인증철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부여된 인증이 철회된다.</li> </ol> <p><b>인증기준 및 절차 (Accreditation Conditions &amp; Procedures)</b>      건축학 전문학위 교과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련의 기준과 이를 통해 전문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심사를 수행하는데 지표가 되는 절차</p> <p><b>인증사업단 (Accrediting Task Force)</b>      건축학교육 교과과정의 평가인증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건인원</p>
--	---

	<p>의 한 부서. 인증사업단은 인증절차에 따라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사업을 수행하며 인증실사팀 위원 후보군을 운영한다.</p> <p><b>인증실사 (Site Visit)</b> 인증신청이 승인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3박 4일 기간 동안 인증실사팀이 현장 방문을 통해 인증기준 및 절차에 의거하여 검증하고 평가하는 절차</p> <p><b>인증실사 의례 (Site Visit Protocol)</b> 실사팀이 인증실사 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p> <p><b>인증실사팀 (Site Visit Team)</b> 인증신청 프로그램을 방문하여 인증기준과 절차에 의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인원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팀</p> <p><b>인증심사 (Accreditation Review)</b> 인증심사는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인증후보자격 심사부터 실사팀의 인증실사, 인증위원회의 인증최종심의 그리고 이사회 의 인준을 포함하는 일련의 심사과정</p> <p><b>인증심사지침 (Accreditation Review Guidelines)</b> 인증 현장실사 등 인증심사를 위해 실사팀에게 제공하는 세부지침. 실사팀이 실사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 제시 및 절차를 보조하는 자료로 인증과정에 대한 표준적 절차를 제시한다. 인증신청 프로그램은 인증준비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b>인증연장 (Extending Terms of Accreditation)</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여된 인증심사 결정을 집중평가에 의해 5년 인증으로 연장하는 심의 결과</li> <li>인증 프로그램이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에 계속인증 심사를 통해 새로운 인증을 부여받은 결과</li> </ol> <p><b>인증위원회 (Accrediting Committee)</b> 인증 신청한 프로그램을 심사하고 인증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건인원 인증</p>
--	--

	<p>최종심의 기구. 또한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제반 정책, 절차, 기준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하는 건인원의 한 부서. 인증을 신청한 프로그램의 인증후보자격 및 인증신청 심사, 그리고 인증실사팀이 제출한 실사팀보고서와 인증제안서를 심사하고 인증 여부를 최종 판단하며 그 결과를 인준받기 위해 이사회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p> <p><b>인증유예 (Temporary Suspension of Accreditation)</b>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학생성과물과 교육관련 자료의 부족 등 프로그램의 심각한 준비부족에 의해 적정한 평가가 어려워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후 적당한 시기에 다시 인증실사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하는 인증의 종류</p> <p><b>인증의 조율 (Mediation of Accreditation Decision)</b> 인증실사팀이 제안한 인증결과와 인증위원회의 인증최종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 주관으로 조율하는 일련의 절차. 인증실사팀은 개별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결과로서 인증의 종류(기간)을 제안하며, 인증위원회는 각 인증실사팀의 인증제안을 존중하여 인증최종심의를 진행한다. 인증위원회의 인증최종심의는 전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간 인증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인증 사례를 검토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절차의 철저한 이행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때 인증실사팀과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건인원 이사회 주관으로 인증 조율을 하게 된다.</p> <p><b>인증의 종류(기간) (Terms of Accreditation)</b> 인증심사의 결과로서 프로그램에 부여되는 인증의 종류. 인증에는 5년 인증, 3년 인증,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유예 그리고 인증거부/철회의 5종류가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인증의 효력과 효과를 지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은 인증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인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p> <p><b>인증최종심의 (Deliberation of Decision)</b> 인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건인원의 인증위원회는 실사팀의 실사팀보고서, 대외비 인증제안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사전에 제공한 모든 형태의 관련 정</p>
--	---

	<p>보 등의 자료를 종합 고려하여 최종 심의하는 절차. 인증최종심의 결과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b>인증후보자격 (Candidacy status for Accreditation)</b></p> <p>프로그램 개설 이후 최초로 건인원에 인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 심사 절차. 전문학위 교과과정 운영, 학사관리체계, 학생수행평가기준, 교육환경 등 최소한의 요건을 평가받고 자격을 취득한다. 인증후보자격은 3년간 유효하다.</p> <p><b>재심 (Appeal &amp; Arbitration)</b></p> <p>인증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인증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 해당 프로그램은 인증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인증 결정을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내에 이사회에 서류를 내고 재심 신청 사유를 설명해야한다.</p> <p><b>주의를 요하는 항목 (Causes of Concern)</b></p> <p>적합으로 판정된 항목이지만 각 기준이 갖는 특성 및 복합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적합 또는 부적합한 경우로서, 현행 수준으로 유지 및 운영될 경우 향후 부정적 항목으로 저하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하는 판정 등급</p> <p><b>집중평가 (Focused Evaluation)</b></p> <p>5년 인증 이외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 인증 유효기간 내에 재평가를 통해 5년 인증으로 인증기간 연장, 인증 받은 학위의 명칭 변경, 추가 인증 프로그램 개설, 관련제도의 변경 등 프로그램의内外적인 변화에 인증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 이는 정식 인증실사 준비에 따르는 과도한 인적·물리적비용을 절감하고 재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한다.</p> <p><b>캔버라협약 (Canberra Accord)</b></p> <p>국제적으로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한국, 미국, 중국, 멕시코, 캐나다, 호주, CAA(영연방) 등 각 국가/인증기관이 인증한 건축학교육 전문학위가 본질적으로 상호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국제협정. 호주 캔버라에서 협정이 체결되었다.</p>
--	--

	<p><b>학생수행평가기준 (SPC; Student Performance Criteria)</b> 인증 프로그램 졸업 이후 건축사 자격 취득 및 등록으로 이어지는 실무수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무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문화적 맥락, 설계, 기술, 실무 5개 영역에 걸쳐 기초 기술과 지식으로부터 전문 기술과 지식을 포괄하는 학생이 수행해야할 국제수준의 기준</p> <p><b>학습 성과 (Educational Outcomes)</b>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인재상을 위해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이 성취한 결과로서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물</p> <p><b>핵심역량 (Core Competency)</b> 건축전문가로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이 졸업 시까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능력과 자질</p> <p><b>현장실습 (Internship)</b> 재학기간 중 건축사사무소 등에서의 다양한 실무적 경험. "실무수련과정" 참조</p>
--	--